

[별지 제4호서식]

2025년 12월 22일 제4회

이 사 회 회 의 록

창 원 레 포 츠 파 크

[별지 제4-1호서식]

2025년 12월 22일 제4회
이사회 일시·출석·심의 내용

○ 일 시 : 2025년 12월 22일(월요일)

 자 : 11시 00분

 지 : 12시 00분

○ 장 소 : 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

○ 총이사수 : 8인

○ 감 사 : 1인

○ 출석이사수 : 7인

○ 감 사 : 0인

○ 의 장 : 장기팔 이사

의장의 2025년도 제4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이어 이사장(관계직원)이 제안설명
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2025년 12월 22일 12시 00분

창 원 레 포 츠 파 크

[별지 제4-3호서식]

의안 목록 표

| 의안 번호 | 제1호 | 제안부서 | 기획홍보팀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건명 : 2026년도 본예산안 | | | |
| 의결내용 : 원안가결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‘26년 본예산규모 | | | |
| (단위: 천원) | | | |
| 구 분 | 본예산액 | 전년도 본예산액 | 증 감 |
| 총 계 (A + B) | 33,214,428 | 32,653,183 | 561,245 |
| 특별회계(A) | 소 계 | 25,893,104 | 25,935,030 |
| | 경륜운영 | 24,000,000 | 23,500,000 |
| | 사업준비금 | 1,893,104 | 2,435,030 |
| 일반회계(B) | 소 계 | 7,321,324 | 6,718,153 |
| | 누비자사업 | 6,391,500 | 6,139,030 |
| |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| 356,671 | 297,142 |
| |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| 303,003 | 281,831 |
| | 도비보조금 | 270,150 | 150 |
| | | | 270,000 |

| 의안 번호 | 제2호 | 제안부서 | 기획홍보팀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건명 :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| | | |
| 의결내용 : 원안가결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단 예산규모 : 32,894,302천원 【기정예산 대비 ↑ 43,795천원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오토캠핑장) 24,000천원 증액(인건비성 ↑ 30,013천원, 기타경비 △ 6,013천원) - (인공암벽장) 19,795천원 증액(인건비성 ↑ 27,406천원, 기타경비 △ 7,611천원) | | | |
| ※ 경륜 및 공영자전거 : 기정예산 증·감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없음 (단위: 천원) | | | |
| 구 분 | 예산액 | 기정예산액 | 증 감 |
| 계(A+B) | 32,894,302 | 32,850,507 | 43,795 |
| 특별회계 (A) | 경륜운영 | 23,500,000 | 0 |
| | 사업준비금 | 2,346,594 | 0 |
| 일반회계 (B) | 공영자전거 | 6,154,790 | 0 |
| | 오토캠핑장 | 305,831 | 24,000 |
| | 인공암벽장 | 316,937 | 19,795 |
| | 도비보조금 | 270,150 | 0 |

| 의안번호 | 제3호 | 제안부서 | 총무회계팀 | | | | |
|--|---|------|-------|----|----|--|---|
| 건명 :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| | | | | | | |
| 의결내용 : 원안가결 | | |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| | | | | | | |
| ○ 제3조(용어의 정의) 제6호 일부개정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d3d3d3;">당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d3d3d3;">개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명절휴가비, 자체평가급(보수월액의 75%), 정근수당(가산금포함), 직책수행비, 업무대행수당, 기타수당, 특정업무수행경비, 위험근무수당, 출납수당,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당초 | 개정 | 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명절휴가비, 자체평가급(보수월액의 75%), 정근수당(가산금포함), 직책수행비, 업무대행수당, 기타수당, 특정업무수행경비, 위험근무수당, 출납수당,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
| 당초 | 개정 | | | | | | |
| 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6.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명절휴가비, 자체평가급(보수월액의 75%), 정근수당(가산금포함), 직책수행비, 업무대행수당, 기타수당, 특정업무수행경비, 위험근무수당, 출납수당,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| | | | | |
| ○ [별표 1] 봉급기준표 개정 : 기본급 2% 인상 | | | | | | | |

| 의안번호 | 제4호 | 제안부서 | 총무회계팀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|----|----|---|---|
| 건명 :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| | | | | | | |
| 의결내용 : 원안가결 | | |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| | | | | | | |
| ○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9항 일부개정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d3d3d3;">당초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d3d3d3;">개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, 명절휴가비, 성과상여금, 자격증수당, 업무대행수당, 특정업무수당, 출납수당, 심판수당, 위험수당, 조장수당, 체육지도자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당초 | 개정 | 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, 명절휴가비, 성과상여금, 자격증수당, 업무대행수당, 특정업무수당, 출납수당, 심판수당, 위험수당, 조장수당, 체육지도자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
| 당초 | 개정 | | | | | | |
| 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⑨ “통상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정비(기술)수당, 운전수당, 누비자상담원(콜센터) 민원수당, 장기근속가산금, 명절휴가비, 성과상여금, 자격증수당, 업무대행수당, 특정업무수당, 출납수당, 심판수당, 위험수당, 조장수당, 체육지도자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| | | | | | |
| ○ [별표 5] 경륜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개정 : 기본급 2.7% 인상 | | | | | | | |
| ○ [별표 5-1] 공영자전거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개정 : 기본급 2.7% 인상 | | | | | | | |
| ○ [별표 5-2] 레포츠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표 개정 : 기본급 2.7% 인상 | | | | | | | |

| | | | |
|---|-----|------|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호 | 제안부서 | 총무회계팀 |
| 건명 :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| | | |
| 의결내용 : 원안가결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제27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제3항 신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정(안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,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 | | | |